

변경 대비표

1. 해당 투자신탁명 : 우리G PIMCO미달러단기채증권투자신탁(USD)[채권_재간접형]

2. 효력발생일 : 2022.12.23 (금)

3. 변경 사유 :

-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정기갱신
- '21.10.21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에 따른 문구 반영

▣간이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1.10.21 자본시장법 개정 다른 용어 변경	- 매입방법/환매방법: 제 X 영업일 - 대차대조표	- 매입방법/환매방법: X 영업일 - 재무상태표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1.07.30	2022.10.31
투자실적추이	-	2022.12.08
운용전문인력	2021.08.24	2022.12.08

▣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21.10.21 자본시장법 개정 다른 용어 변경	- 매입방법/환매방법: 제 X 영업일 - 대차대조표	- 매입방법/환매방법: X 영업일 - 재무상태표
요약정보		
투자비용-동종유형총보수	2021.07.30	2022.10.31
투자실적추이	-	2022.12.08
운용전문인력	2021.08.24	2022.12.08
제2부.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집합투자기구의 연혁	-	연혁추가
5.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가.운용전문인력	2021.08.24	2022.12.08
6.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다.종류형 구조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펀드규모	2021.07.31 기준	2022.10.31 기준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②채권</p>	<p>법 제 4 조제 3 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 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 71 조 제 4 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u>)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화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p>	<p>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 권(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법 제71조제4호에 따른 주권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 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화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채권"이라 한다)</p>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③자산유동화증권</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 증권"이라 한다)</u></p>	<p>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자산유동화 증권"이라 한다)</p>
<p>8.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나. 투자제한 ③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p>	<p>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u>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u></p>	<p>나.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시행령 제 79 조 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삭제> 한국주택금융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p>

	<p>공사 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으로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삭제>「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 제 5 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p>
<p>9.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 피투자집합투자기구 펀드규모</p>	<p>2021.07.31 기준</p>	<p>2022.10.31 기준</p>
<p>12.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산정방법</p>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센트(cent)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센트(cent)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기준가격의 산정일 전날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기준가격 산정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센트(cent)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센트(cent)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p>
<p>12.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나.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3)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p>	<p>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외국의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p>	<p>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증권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다만, 평가일의 공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일의 공표가격에 의하여 평가) 외국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의 최근일에 공고된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단, 외국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집합투자증권은 그 외국집합투자증권이 거래되는 시장의 평가기준일 전날의 최종시가</p>

13.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2021.07.30	2022.12.08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재무정보 2.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	제 1 기(2022.12.08) 기준
제4부.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 내용	2020.12.31 기준	2021.12.31 기준
1.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운용자산 규모	2021.08.23 기준	2022.12.08 기준
3.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나.주요업무 (1)주요업무	-	⑩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투자신탁재산의 내역 일치여부 확인
6.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KIS채권평가	KIS자산평가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3.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나. 수시공시 (2)수시공시	②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②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 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